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2938

2025년 12월 18일
교 육 위 원 회

Ⅰ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8월 11일, 정준호 의원

2. 회부일자 : 2025년 8월 14일

3. 상정일자 :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1차 교육위원회

(2025년 12월 18일 상정, 수정가결)

Ⅱ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정준호 의원)

1. 제안이유

○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기관의 장이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·학생의 학부모,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지급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2조의2)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○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11일 정준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938호로 발의되어 2025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
○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교육기관의 장이 학교안전공제사업에 대해 피공제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, 피해자를 적기에 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○ 안 제12조2는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교육기관의 장이 학생 및 보호자 등에게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종전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학교안전법」)은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[1]되어 있었으나, 피공제자가

---

1) 제41조(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) ①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.

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제3조(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)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.

청구 절차 및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적기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.

○ **이에 국회는 지난 2025년 1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가입자는 피공제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해 안내하도록 「학교안전법」을 개정(2025.7.22. 시행)하였고[2], 같은 법 시행령에 안내 방법 및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[3]되었습니다.**

[그림-1]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 청구절차[4]

---

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공제급여청구서에는 청구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(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에 대한 공제급여청구서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입원확인서 등 의무기록과 간병 필요 여부 등에 관하여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이 발급한 소견서로 한다)를 첨부해야 한다.
③공제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④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사실을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.

2) 제41조의2(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) ①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,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) 제20조의3(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)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1. 안내 방법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
가. 서면 교부
나. 우편 또는 전자우편
다. 전화 또는 팩스
라.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
2. 안내 내용: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
가. 공제급여의 청구 방법
나. 공제급여의 처리 절차
다. 공제급여의 지급 방법
라. 그 밖에 학교안전공제 사업과 관련한 중요 사항

4) '시의원 요구자료 제출(1720번)' (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예방사업부-3668, 2025.8.19.)

○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재규정하여 학교장이 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공제사업 내용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것으로, 주민 이해도 제고라는 측면에서 적기에 피해를 구제하고 공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.

○ 다만, 안 제1항의 ‘법’ 및 제2항의 ‘법 시행령’은 지칭하는 법령이 모호하므로, 의미 전달의 명확성을 위하여 각각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및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으로 풀어서 기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 역시 ‘법 시행령’으로 표기된 부분을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으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0439, 2025. 8. 20.).[5)]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Ⅴ. 토론요지 : 없음.

Ⅵ. 수정안의 요지

○ “법”을 “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”로 수정함(안 제12조의2제1항).

○ “법 시행령”을 “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로 수정함(안 제12조의2제2항).

---

5)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(행정관리담당관-10439, 2025. 8. 20.)

Ⅶ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Ⅷ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Ⅸ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938

제안연월일 : 2025년 12월 18일
제 안 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안 제12조의2제1항의 “법” 및 같은 조 제2항의 “법 시행령”이 지칭하는 법령이 모호하므로,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법령명을 풀어서 기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“법”을 “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”로 수정함(안 제12조의2제1항).

○ “법 시행령”을 “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로 수정함(안 제12조의2제2항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2조의2제1항 중 “법”을 “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시행령”을 “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신 설>	제12조의2(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) ① 교육기관의 장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**법**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,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.	제12조의2(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) ① 교육기관의 장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**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**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,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**법 시행령**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**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**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) ① 교육기관의 장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,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2조의2(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) ① 교육기관의 장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,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